

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김경훈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21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  
발의자: 김경훈, 강석주, 김규남,  
김용호, 김재진, 김지향,  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 
박춘선, 신복자, 심미경,  
유만희, 유정희, 이상욱,  
이성배, 이영실, 이종태,  
이종환, 임춘대, 채수지,  
최민규, 홍국표, 황유정,  
황철규 의원(25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규정된 법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함(안 제23조제1항).
- 나. “물품출납사무의 검사”를 “물품관리 검사” 등으로 변경함(안 제27조)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

#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제88조 및 영 제87조”를 “제60조”로 한다.

제27조의 제목 “(물품출납사무의 검사)”를 “(물품관리 검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”를 “물품관리검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비대상 사유서

#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3조(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)제1항의 내용을 수정(제88조 및 영 제87조 → 제60조)하고, 제27조(물품출납사무의 검사)의 용어를 수정(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→ 물품관리 검사,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 → 물품관리검사)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현

추계 분석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